

매체의 위상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는 다중언론(인터넷 언론)의 피해 구제에 대비한 심도 있는 대책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이제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집의 다양성, 프라이버시, 윤리,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중재 대책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VII. 언론 중재 활동의 확대 규정

인간의 언어 문자 표현이 반드시 사회성에 충실하지않은 않아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문이나 방송이 높은 이상을 내걸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정착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지만 매체의 표현행위가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표현될 때 사실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으로서의 개인이 표현하는 의견이나 사실이 언어 문자 영상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구성될 때 부단히 거리감이 발생한다. 현재 언론 중재의 근거는 “언론 보도”라는 범위 내에 한정하지만 이를 시대 인식에 맞게 확대 해석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규정해온 법적 용어도 언론중재 이전의 모법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의견(opinion)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의 확대 적용이다. 서양에서 신문을 비롯한 정기 간행물이 정착하는 생태의 과정을 보면 먼저 information이 기본이 되고 점차 opinion으로 확대하여 두개의 축으로 정기간행물의 구성이 성립된다. 의견의 제시가 일방적이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여 다원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반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반론 보도의 기회가 성립되는 것은 타당하다.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게재(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박선영은 정의한다.

둘째는 용어의 해석 문제이다.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에는 “보도”라는 개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정기간행물법에서는 “언론 보도”로, 방송법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 등으로 편성을 구분한다. 보도는 뉴스와 같이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보도의 원형은 다르다. 영국에서 1640년대 이후 신문이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신문은 “to inform”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명사형이 information(알림 또는 정보)이다. “알려주다”, “통지하다”, “보도하다”의 뜻으로 일본에서 번역 사용되어 오다가 보도로 되었다. 뉴스는 정보 뿐 아니라 의견도 본질로 한다. 우리 사회의 경우는 정보라는 말이 주로 첩보 시각에서 일제이후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

런 정보개념에서 출발했기에 1960년대까지도 신문이나 방송을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해석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어법으로 보였다. 우리 사회의 대중매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때부터 이미 정보관의 구축이 아예 결여되고 언론으로만 사회적 인식이 구축되어 버렸다.

셋째는 언론 개념의 포괄적 해석과 인터넷 언론 개념 규정의 재검토이다. 앞에서 매체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론은 매체의 양식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호칭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매체 양식을 포괄하여 “언론”으로 명명하는 경우 공중이 가지는 언론권(right to speak)의 위상은 모호해져 버린다는 점이다. 공중의 언론권은 가장 기초가 되며 언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편집권도 반론권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볼 때 “언론” “정보”등은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며 재평가가 필요하다.

넷째는 규제와 보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다. 방송의 경우 공업선진국의 시각을 보면 규제보다는 보호에 더 치중한다. 그 이유는 방송의 존재 양식이 공영 중심에서 민영 확대로 나아가면서 방송이 언론의 속성과 함께 문화상품으로서의 속성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양자의 차이는 규제가 개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지만 이에 비하면 보호는 개인이나 공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단의 장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활동은 규제의 전통이 핵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업선진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호의 차원에서도 중재를 연계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제4, 5매체의 사회적 제도화 동향은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법제화하고 있고 중재 역시 이러한 취지를 확대 해석하는 시도도 가능하다.

VIII. 결론

본 발제는 공동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구성되었다. 첫째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으로 정착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의미의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우리의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다. 신문 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 중심로의 인식 편향은 공중이 의견 표현을 하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위치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인터넷 중심의 표현 행위를 언론으로 규정짓는데도 상당한 혼돈이 야기 될 수 있다. 매체는 공학기술의